

제 92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자문

1. 202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안)
2. 2021학년도 동암고 학교생활 규정 개정(안)
3. 2021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및 교내체험학습 계획(안)

202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안)

안건 번호	1
----------	---

제출일자 : 2021년 9월 28일
제출자 : 동암고등학교장
담당자 : 교사 정승수

1. 취지 및 배경

- 가. 책을 통한 지면 학습을 벗어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 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의 현장과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실시 목적

- 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과정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증진한다.
- 나.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성, 책임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 극기심을 함양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으로 육성한다.

3. 운영방향

- 가. 관련법규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실시한다.
- 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
- 다. 준비에서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라. 학교평가 · 장학활동 · 감사 및 각종 사안 처리 시 본 안내사항에 기초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 마.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과다한 경비지출을 지양한다.

붙임 1. 202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기본계획서 1부.

1.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9월

- 학부모 및 학생 참석여부 조사 : 1회 실시 예정(9월 30일)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도내로 무박으로 변경

나. 현장체험 학습 계획 수립(9월)

- 테마별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계획 수립(4개 테마)

다. 테마별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계획 수립 후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참석 여부 조사(9월)

라. 프로그램 선정, 예약 및 테마별 여행일정 수립에 따른 기초견적서 산출(9월)

2. 세부내용: 붙임 참조

**202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동암고등학교
(東岩高等學校)

2학년 현장 체험 학습

1. 취지 및 배경

책을 통한 지면 학습을 벗어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적성과 소질, 흥미와 개성을 중시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의 현장과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적성에 알맞은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존재로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오늘의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들이다. 더 좋은 교육으로 세계화 시대에 알맞은 견문을 넓히고 세계화에 대비한 행동양식을 제공하여 미래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은 인내력과 독립심을 길러주고, 협동성과 공동체의식이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활동이다.

2. 실시 목적

- 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과정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증진한다.
- 나.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성, 책임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 극기심을 함양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으로 육성한다.

3. 운영방향

- 가. 관련 법규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실시한다.
- 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 및 안전 취약 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 활동, 현장체험학습을 지양한다.
- 다.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학여행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여행희망조사 적극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
- 라. 준비에서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마. 학교평가·장학활동·감사 및 각종 사안 처리 시 본 안내사항에 기초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 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데마형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과다한 경비지출을 지양한다.
- 사. 코로나 19와 감염과 관련하여 숙박 및 식당 이용을 자제한다.
- 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주제별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한다.
- 자. 체험 기간 동안 개인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한다.

4. 세부운영계획

가.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1차)

- 시기: 2021년 9월
- 대상: 2학년 전체 및 2학년 학생 학부모
- 설문 내용: 참가여부
- 설문 결과에 맞추어 장소를 선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여 실시한다.

나. 현장답사

- 시기: 2021년 10월
- 내용: 현장답사는 학부모, 교사,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참여
(단, 시행 직전 답사는 실제 업무 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
- 확인사항

- 1) 실시경로 예정지와 수학여행 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2)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 위생 상태 및 방역 여부
- 3)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4)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다. 사전예비교육 및 안내자료 설명

- 예비교육일시: 출발 1일 전
- 안내자료 설명
 - 1) 체험학습일정표
 - 2) 준비물 및 유의사항
 - 3) 체험학습 장소 사전안내
 - 4) 차량 및 숙박시설 이용 시 인원 배정표
 - 5) 현장체험학습 자체 평가 계획 및 과제 제출 내용과 방법
 - 6) 개인 소독 및 방역 교육

라. 인솔교사 교육 및 업무분장

1) 업무 분장

순	담당업무	담당자	업무내용	참고
1	단장	오현철	현장체험학습 전반 총괄	교감
2	총괄	정승수	현장체험학습 전반 지휘	학년부장
3	기획	정승수, 김종규, 한승희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사전교육	
4	통솔	김태경, 정장환	집합, 해산, 승차, 숙소 내 질서지도	
5	급식	주승현, 김종규	식사준비, 질서유지, 결식자 확인 및 지도	
6	보건	장해현, 강영구	신체 이상자 관리 및 구급약 준비	
7	생활지도	김태경	음주, 흡연, 폭력예방	
8	방역	담임교사	자가 진단, 개인 소독 및 방역물품	

2) 인솔교사 교육

가) 제1회 교육 :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

- 현장체험학습의 취지
- 현장체험학습 일정
- 현장체험학습의 특징

나) 제2회 교육: 부분 수정할 것 논의, 현장체험학습 참가 교사 전체회의

- 장소 : 4층 미디어실
- 내용 : 현장체험학습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바람직한 학생지도
- 학업의 연장으로써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 (교통, 식사 및 학생 건강 관리)
- 사고 사전 예방에 대한 주력, 특히 음주, 흡연, 사행성 행위 등 퇴폐적(성폭력, 성매매) 행위 근절

마. 안전지도계획

○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1) 차량으로 이동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이 타고 가는 차량의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둔다.

나) 자동차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다) 하차할 때는 몇 시 몇 분까지 승차하라는 선생님의 지시를 듣고 하차한다.

라)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자기 옆자리에 탄 사람이 승차했는지 확인한다.

마)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차창 밖으로 신체의 일부를 내놓지 않는다.

바) 멀미를 하는 사람은 출발 전에 미리 약을 먹거나 멀미 패치를 붙인다.

(비상시 위생 봉투를 사용한다.)

사) 탑승 전 개인 소독, 차량 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2) 도보로 이동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이동 중에는 사전 허락 없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특히 기념품을 사거나 화장실을 가는 경우)
- 나)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고 부득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 다) 마스크 항상 착용

3) 탐방지에서 지켜야 할 사항

- 가)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무 곳에서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다.
- 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 라) 가이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동 중 MP3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마) 급한 용무 발생 시에는 동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반드시 인솔 교사의 지시를 받는다.
- 바) 관람 및 체험 전에는 반드시 개인 소독을 한 후에 입장 또는 체험한다.
- 사) 사진 촬영 시 마스크 벗지 않는다.

바. 불참자 지도계획

- 1) 임시담임 지정운영
- 2) 운영시간 : 총 4교시 등교 - 09:00, 하교 - 16:00
- 3) 인원 및 명단 : 인원 ○명
- 4) 과제물

과 목	과 제 내 용	비 고
국 어	소설 한 편 읽고 줄거리 정리하기	담당교사
영 어	예습(단어, 숙어, 문법, 해석하기)	담당교사
수 학	교과서 단원 연습, 종합문제 풀기	담당교사
교양	독서 및 체험활동	담당교사

5) 결과확인 : 매일 담당 선생님께 과제물 제출

사. 현장체험학습 시행

: 10월 26일(화) ~ 10월 29일(금)

1) 주제별 일정

주제1) 군산 (편도 53분 소요)

학교 → 근대역사박물관 → 진포 해양 테마공원(1인/1,000원) → 뜯다리 부두(AR 체험) → 점심(1인, 10,000원) → 신시도 해수욕장/ 갯벌체험(입장+대여:12,000원)

주제2) 서천 (편도 44분 소요)

학교 → 국립 생태원 (관람, 1인/ 3,000원) → 점심(도시락, 1인/10,000원)

주제3) 무주 (편도 1시간 20분 소요)

학교 → 무주 데프콘(서바이벌 체험 또는 레프팅, 1인/40,000원) → 점심(바베큐, 1인/15,000원)
→ 무주 반디랜드(관람, 1인 / 3,200원)

주제4) 전주

학교 → 향교 → 경기전 관람 → 한옥마을 탐방 → 오목대 → 점심(도시락, 1인/10,000원)

	26일(화)	27일(수)	28일(목)	29일(금)
주제1	1, 2, 3, 4	8, 9, 10	5, 6, 7	
주제2	5, 6, 7	1, 2, 3, 4	8, 9, 10	
주제3	8, 9, 10	5, 6, 7	1, 2, 3, 4	
주제4				전체

● 공통

- 학급 당 버스 1대 및 한 그룹당 안전 및 방역 요원 1명 배치

- 1일 1회 간식(3,000/1인) 제공

- 1일 1회 점심(1인/10,000원) 제공

자.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계획

1) 학생 자체 평가

- 일 시 : 체험완료 후 7일 이내
- 현장체험학습 평가회 개최

2) 교사 자체 평가

- 일 시 : 체험완료 후 7일 이내
- 2021년도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장단점을 분석 비교하여 차후 학생지도 자료로 삼음.

3) 학생 개별 평가 기록(행동 발달 평가 자료로 이용)

- 학생 작품 평가(기행문, 학급사진 콘테스트 - 시상)
- 학생 생활 관찰 기록(흡연, 음주, 사행성게임, 출입금지 장소 출입 등)
- 학생 봉사 활동 및 선행 미담 등(학생부 기록)
- 학생 오락 및 질서 교육
- 단체 생활 (승차 내, 숙소 생활, 학급 및 그룹 활동)

2021학년도 동암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

안건 번호	2
----------	---

제출일자 : 2021년 9월 28일
제출자 : 동암고등학교장
담당자 : 교사 임청삼

1. 관련 근거

-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2)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2020. 5. 11.) 2019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심의

2.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학교

- 1) 2017. 12. 이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초등학교: 218교, 중학교: 98교, 고등학교: 56교) 또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상당한 학교(초등학교: 182교, 중학교: 99교, 고등학교 68교)
- 2) 학교생활규정(또는 학생회 규정)을 근거로 선도부를 운영하는 학교(중학교: 52교, 고등학교: 20교)
- 3) 학교생활규정(또는 학생회 규정)을 근거로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를 운영하는 학교(초등학교: 12교, 중학교: 53교, 고등학교: 45교)

3. 기대효과

- 1)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에 기여
- 2) 학교생활규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제·개정을 통해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기반 마련

붙임 : 2021년 동암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1부. 끝.

차례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등 암 고 등 학 교

2021년 9월

제1장 총칙	3
제2장 학생생활	3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7
제4장 학생생활교육	10
제5장 규정의 제·개정	11
별첨 1 징계 규정	12
별첨 2 학생 복장 및 음식 규정	13
별첨 3 각종 학교생활 규정	14

동 암 고 등 학 교 생 활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동암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①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 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생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③ 특별설과 체육관(감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7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개성 실현의 권리)

-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제①항의 권리가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지지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돋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2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냄새,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옥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존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성(性)에 관한 욕사를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⑨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제1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철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폭력에 방지 및 대책)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고름됨,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경우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자체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실효성 검증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④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 이외의 학생 징계에 관한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7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중 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구관한 일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교사의 수업권)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인팎에서 들여다니지 않는다.
- ⑤ 폐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교재는 성실히 수령한다.
- ⑦ 수업시간에 출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점을 썬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8조(동아리활동)

- ① 학생은 방교 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음의복장)

- ① 음의 복장,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 단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음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족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 ② 교외에서 활동 시 학생의 이름을 가릴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하여 복장에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하거나 또는 복장에 부착물(명찰 등)의 패용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태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채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20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키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종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종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제21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교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퍽죽, 드라이기, 등의 인화물질과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항정신성 약물 일체
- ⑧ 교사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22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가진다.
- ⑤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개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제23조(자치활동)

-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학생회, 출판 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기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지침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 ⑧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기구에서 한다.

제24조(기타 교내생활)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암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폐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2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③ 음란·폭력성 우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애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④ 학교에서 영리를 추구한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6조(통신, 미디어 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정을 순수해야 한다. 다만 단위 학급의 경우 전화기 및 휴대전화에 관하여 학급 지침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학급의 규칙을 따르고 제④항의 최대 10일 이내 보관 기간을 초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는 없다.

④ 자·조계 시가·수어·체·문화도 하고 해시·퀴즈·화도·드로잉·체험 등을 포함한 저자기

- | | |
|--|--------------------------------|
|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한 학기 내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부 모 내교 및 상담 조치 또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
|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 할 수 있다. 학생의 휴대 전화기 및 미디어 기기를 일수한 교과 담당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위탁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접 인수인계 해야 한다.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
| 1번 직별 시 | 5일 이내 보관 |
| 2번 직별 시 | 10일 이내 보관 |
| 3번 이상 직별 시 | 학부모 내교 및 상담 조치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에 대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와 정제 등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학생안전부부장, 학생안전부 교사(학교폭력개 교내생활개), 진로상담부장, 해당학년부장, 관련학급 담임으로 하고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② 흡연, 음주, 금지 물품 소지 및 용의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은 담임교사 및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로 구성되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징계 기준은 (별첨 3)에 따른다.

③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별첨1,2,3)에 따른 각종 위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29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윤리·준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장계는 문제학생에 대한 내용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장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춰작한다.

제30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공휴일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 내 통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 생활교육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질계의 방법)

- ①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안전부, 진로상담부교사 및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 출석정지로 대신하는 기간에 정체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 학교장은 전학 등 학생 학습 환경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학교장은 퇴학 전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4조(징계의 세부사항) 징계의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① 학교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재·교구 정비 |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

② 사회통사

1. 지역 행정기관 규제 종사 : 행정비화, 교통안내, 거리설치 유지 관리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몸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등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자체·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지원봉사자, 청소년 대화학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6. 틀별교운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제35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치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며,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지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삼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증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7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록 전제로 징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8조(징계해제) 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징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학생안전부 담당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0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습·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42조(교사의 권리)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시정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년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⑦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3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수업권 침해로 인한 교실에서 분리조치 가능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처할 수 있다.

1.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2. 복장 위반으로 통산 3회 징계를 받은 자
3.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학생의 품위에 벗어난 옥설을 한 자
5. 교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한 자
6. 생활 습관 및 예절이 바르지 못한 자
7. 미인정 결석을 연속 3일 한 자
8. 미인정 결과 또는 조퇴를 연속 3회 한 자
9. 미인정 징계를 연속 3회 한 자
10. 고의로 학습 분위기를 흐리게 한 자
11. 기타 이상의 각 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향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4. 죄정한 수준의 빙과 후 지도
- 5. 핵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윤상복구, 청소 명령
-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④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5장 규정의 제·개정

【별첨 1】

장계규정

제4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 학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동암고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허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제작위원과 반드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드시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들의 직접선거, 또는 학생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⑥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⑦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부여 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마련해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한다.
- ⑧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 ⑨ 위원회 구성 원로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 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⑩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⑪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험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제작 위원의 고반수
 2. 재직 교원의 고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 할 수 있다.

제46조(검토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사항에 관한 검토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2.03.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구분	항	행위 내용	징계 내용				
			교내	사회	특별	출석	퇴학
예절	1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2	공공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를 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에 불응한 학생	○	○	○	○	○
	4	징계에 불응한 학생	○	○	○	○	○
	5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6	형벌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7	무단 결식, 무단조퇴를 3일 또는 3회 이상 한 학생	○	○	○	○	○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 10일 이상 무단결식을 한 학생	○	○	○	○	○
	9	교체 위원이 상습적이며 개전의 징이 없는 학생	○	○	○	○	○
	10	수업 또는 티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수업	11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12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훔친 학생	○	○	○	○	○
	13	교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	○	○	○	○
악물	14	분드, 대마초, 환각제나 미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15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	○	○	○	○
	16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
	17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교의로 파손한 학생	○	○	○	○	○
폭력	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킹 행위를 한 학생	○	○	○	○	○
	19	사이버몰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한 학생	○	○	○	○	○
	20	타인의 소유물을 채손(절도행위 포함)한 학생	○	○	○	○	○
	2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때 또는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한 학생	○	○	○	○	○
소지품	22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23	학습 기자재(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	○	○	○	○	○
기타	24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한다.	○	○	○	○	○
	25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	○

【별첨 2】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구분	내용
복장	<p>○ 등●하고시에는 반드시 <u>직접된 교복을</u> 단정하게 입고 교복의 면청을 금한다. (체육복 불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설기: 상의, 와이셔츠 & 조끼, 하의 - 환·설기 : 간복 착용 - 하·설기: 상의, 와이셔츠 & 하의 <p>※ 1. 기후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교복 혼용기간을 둔다.</p> <p>2. 교복색과 유사한 계열의 카디건, 후드집업, 페딩이나 기타 외투를 허용한다. (지나치게 큰 글자나 화려한 무늬가 있는 옷은 허용된다.)</p> <p>3.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등교하고 6~9월에는 교내에서 반바지(검정 또는 진남색) 허용</p>
두발	<p>○ 지나친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는다.</p>
신발	<p>○ 등·하교 시 운동화를 신고, 실내●외 신발을 구분한다.</p>
기타	<p>○ 귀걸이등 화려한 장식구는 허용하지 않는다.</p>

구 분	내 용
음 주	<p>1. 1회 쳐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등보 및 춤연 예방 안내 자료 배부 - 매주 금요일 양과 후 의무봉사 4회 참여(평수 4시간, 제한기간 1개월) <p>2. 2회 쳐발 : 춤연 예방 프로그램 및 춤연 클리닉 참여</p> <p>3. 3회 쳐발 : 사회봉사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p>
금지 물품 소지	<p>1. 1회 쳐발 : 행동 수정 나침서 작성 및 부모님 면담</p> <p>2. 2회 쳐발 : 교내봉사</p> <p>3. 3회 쳐발 : 사회봉사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p> <p>※ 보는 금지물품은 쳐발 시 바로 수거하여 부모님께 알게 한다.</p>
복장 및 용의 규정 위반	<p>1. 2회 위반 : 행동 수정 나침서 작성 및 교내봉사 3일 이내</p> <p>2. 5회 위반 : 학부모 면담 및 교내봉사 7일 이내</p> <p>3. 10회 위반 : 사회봉사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p>

【별첨 3】 각종 학교생활 정례 규정

3학년 현장체험학습 및 교내체험학습 계획(안)

안건 번호	3
----------	---

제출일자 : 2021년 9월 28일
제출자 : 동암고등학교장
담당자 : 교사 문병철

1. 취지 및 배경

- 가. 책을 통한 지면 학습을 벗어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 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의 현장과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실시 목적

- 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과정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증진한다.
- 나.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성, 책임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 극기심을 함양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으로 육성한다.

3. 운영방향

- 가. 관련법규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실시한다.
- 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 학습을 지양한다.
- 다. 준비에서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라. 학교평가 · 장학활동 · 감사 및 각종 사안 처리 시 본 안내사항에 기초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 마.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과다한 경비지출을 지양한다.

붙임. 2021학년도 3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교내체험학습 추진일정 1부.

2021학년도 3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교내체험학습 추진 계획(안)

1. 목적

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교내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여 자기 주도적 역량을 신장

나. 소규모 운영으로 소통과 친밀감을 극대화하여 배움 공동체의 학교 문화를 정착

2. 기본방침

가. 전 교사가 지도교사로 동참하여 프로그램을 최대한 소규모로 편성

나.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 집행, 정리 발표함으로써 자기주도 역량을 신장

3. 추진일정

가. 기간: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 12월 1일 수요일

나. 참가 인원: 3학년 259명, 교사 10명 예정

다. 추진 일정

일정	시기	내용	비고
학년 회의	9 / 27	1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교내체험학습 추진 계획 논의 -목적 -기본방침 -추진인정 -프로그램별 장소와 인원 및 인솔교사 -프로그램별 예산 -안전교육 지도 계획 -교직원 청렴 교육 계획	학년부
프로그램 안내	9 / 30	1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교내체험학습 취지 설명 및 프로그램 안내	학년
가정통신문	10 / 5	학생, 학부모 체험학습 안내 및 동의서 수합	학생, 학부모
프로그램 확정	10 / 8	프로그램 및 지도교사 확정	학년부
운영위원회	10 / 12	1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교내체험학습 자문	부장, 운영위원
1차 모임	10 / 19	역할 분담 및 프로그램 협의	학생, 인솔교사
2차 모임	11 / 8	일정, 교통편 및 비용 확정	학생, 인솔교사
가정통신문	11 / 15	테마별 장소, 프로그램 및 비용, 집합장소 및 준비물 안내	학년부
4차 모임	11 / 22	안전교육, 성교육, 규칙 및 약속 정하기, 집합장소 및 준비물 안내	학생, 인솔교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	11 / 29 ~12 / 1	테마별 장소	학생, 인솔교사